學校圖書館 關係法令의 諸問題

邊 宇 烈
(公州大學校 師範大學 圖書館敎育科)

目 次

Ⅰ. 緖 論
Ⅱ. 司書敎師
1. 資格 區分
2. 主任敎師
3. 配置基準
Ⅲ. 學校司書
Ⅳ. 施設 및 設備
Ⅴ. 資 料
Ⅵ. 豫 算
Ⅶ. 職制確立
Ⅷ. 結 論

Ⅰ. 緖 論

전인교육을 목표로 출발한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44년간 34차례나 개정되었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지옥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도서관을 빈사의 상태로 몰아 가고 있는 악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제도의 발전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만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다. 많은 종류의 도서관중에서 특히, 학교도서관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장해 갈수 있는 힘이 없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 구성원들의 자생적인 요구에 의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학교도서관에 대하여 그 동안 敎育部는 철저하게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해 왔으며, 學校長 역시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지식편중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배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도서관을 입시준비의 장소로, 사서교사를 자습감독관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수없이 많은 교사들 중에서 유독 특수교사 직군에 묶여 멸시와 냉대를 받아 왔던 특수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가운데, 특수교사는 이미 1급과 2급 정교사로 세분되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었고, 양호교사 역시 중고등학교에 보건과목을 신설하고, 자격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제 하늘아래 단 하나, 유독 사서교사만이 초등, 중등의 구분도 없이, 교감, 교장은 커녕, 그 흔한 주임교사 한번 못해 보고 정년을 맞아야 하는 차가운 현실 만이 기다리고 있는 분통이 터지는 실정에 놓여 있다.

현행 교육법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관계 법령은 정규사범대학에 도서관교육과가 설치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령으로 사범대학에 도서관교육과가 설치된 이후에는 그에 따라 관계 법령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학교도서관과 관계가 있는 법규를 인적 요소로서의 사서교사와 학교사서, 물적 요소로서의 시설, 자료 및 예산 등 학교도서관과 관계가 있는 각종 법규를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司書敎師

1. 資格 區分

교육법 제79조 1항 별표 1의 교사 자격기준에는 1급 정교사와 2급 정교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서교사의 경우는 초등, 중등의 구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1급, 2급의 구분도 없이 사서교사로만 되어 있다. 현재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의 자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사서교사만이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서교사의 자격이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 수행과 교육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 오고 있다. 사서교사의 업무가 단순히 도서의 정리나 이용, 관리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파악하여 수업현장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봉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등과 중등의 자격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이 2급과 1급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주임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으로의 승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것은 똑같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 자격을 받은 다른 교사와 비교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구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 主任敎師

현행 주임교사 임용규정 제4조에 보면, "① 주임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체육주임교사·과학주임교사 및 분규장 주임교사의 경우에는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도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를 임용함에 있어서 중등학교의 교도주임교사는 교도교사 자격증, 체육주임교사는 체육교사자격증, 국민윤리주임교사는 국민윤리교사 자격증 또는 일반사회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서교사로 발령받은 사람이 주임교사가 되려면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법적 규제에 의하여 주임교사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교무주임, 학생주임, 교도주임 같은 주임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주임제도는 〈표 2〉와 같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가산점)1항 6호에 "1급 정교사가 주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월마다 0.021점 씩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서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주임교사 제도가 신설되지 않으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때 1.25점의 점수는 기대 할 수 없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사서교사 주임제도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신설되어야 한다.

3. 配置 基準

1992년 文敎統計年報와 韓國圖書館統計에서 학교도서관의 수와 사서교사의 수를 살펴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설치 비율은 평균 65.8%이고, 사서교사의 배치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일반교사가 사무분장으로 매년 돌아 가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도서관 전담부서가 문화부로 이관되고,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배치기준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때 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1990년 9월 25일 대통령이 도서관 전담부서 이관에 따른 부처간 기능조정에서 공공도서관은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학교도서관은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교육의 보조, 지원시설로서 육성, 활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어 국무총리 지시 제9호(1990. 10. 12)로 학교도서관을 교육의 보조, 지

〈표 1〉 사서교사 자격구분 개선안

현 행				
〔별표 1〕 교 사 자 격 기 준				
학교별 자격	중 등 학 교	국 민 학 교	특 수 학 교	유 치 원
정교사 (1 급)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1.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國民學校 正敎師(2級) 資格證所持者로서 敎育經歷이 3年 이상이고, 放送通信大學初等敎育科를 卒業한 者 3. 國民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所持하고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過	1.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2.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幼稚園·國民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1級) 資格證을 가지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진 자 3. 幼稚園 正敎師(2급)資格證을 所持하고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幼稚園 敎育過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현 행				
〔별표 1〕 교 사 자 격 기 준				
학교별 자격	중 등 학 교	국 민 학 교	특 수 학 교	유 치 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	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4. 幼稚園·國民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 資格證을 가지고 1年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정교사 (2 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1.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特殊敎育科를 卒業한 者 2. 大學의 特殊敎育 關聯學科 卒	1.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同等以上의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

현 행

〔별표 1〕

교 사 자 격 기 준

학교별 자격	중등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입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取得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3.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初等敎育過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4.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필	業者로서 재학중 소정의 敎職過程을 履修한 者 3. 幼稚園·國民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 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을 받은 者 4. 幼稚園·國民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 資格證을 가지고 敎育大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	육과 교직학점을 取得한 자 2.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幼稚園 敎育過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3.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者
사서교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양성강습을 받은 자 3. 敎育大學院 또는 敎育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敎育科에서 司書敎育過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현 행

〔별표 1〕

교 사 자 격 기 준

학교별 자격	중등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실기교사	1.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2. 大學·專門大學 졸업자로서 재학중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고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양호교사	1. 大學의 看護學科 卒業者로서 看護師免許證을 가진 자 2. 專門大學의 看護科 卒業者로서 在學 중 所定의 履修學點을 取得하고 看護師免許證을 가진 者			

비고 : 1. 이 표 중 국민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각종 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동등 정도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 교감, 원장,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년수는 교육 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表중 專門大學에는 종전의 初級大學·專門學校 및 實業高等專門學校를 포함한다.

4. 實技敎師인 중 實業系實長敎師는 國家技術資格種目이 있는 科目은 해당 種目의 機能士 2級이상 資格을 所持하여야 한다.

개 정 안				
〔별표 1〕				
학교별 자격	중 등 학 교	국 민 학 교	특수학교	유 치 원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사서교사 (1 급)	1. 중등학교 사서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사서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중등학교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국민학교 사서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받은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국민학교 사서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국민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사서교사 (2 급)	1. 사범대학 도서관 교육(문헌정보학 포함) 과를 졸업 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대학졸업자로서 도서관학(문헌정보학 포함)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4.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도서관학(문헌정보학 포함)에 관한 학점을 28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대학졸업자로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초등교직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민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나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비고 : 5. 이 표중 사서교사 1급, 2급은 정교사 1급, 2급과 동일하다.

〈표 2〉 사서교사 주임제도 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무) 주임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각각 분담한다.	제3조(업무) ·····
1. 교무주임교사는 학생의 학적관리, 전편입학 및 그 외 교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
2. 연구주임교사는 연구계획, 연구수업, 연구발표 등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
3. 학생주임교사는 학생에 대한 표창, 징계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
4. 실과주임교사는 실과교육 계획과 생산품관리등 실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
5. 학년주임교사는 동학년 간의 업무조정, 교육과정진도와 학년행사 등 동학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
6. 교도주임교사는 학생상담, 학생이해를 위한 제반 검사 및 진로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
7. 체육주임교사는 학생체육과 보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
8. 분교장 주임교사는 분교장에 대한 교무를 담당한다.	8. ·····
9. 과학주임교사는 학생과학교육지도 및 과학교육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
10. 국민윤리주임교사는 국민정신교육, 이념·사상·반공 및 안보에 관한 교육 및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
11. 새마을주임교사는 새마을교육과 성인교육, 학생봉사활동 및 생활개선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
	12. 사서주임교사는 교육목표 달성과 교육과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독서교육 및 도서관 이용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표 3〉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수

구 분	학 교 수	도서관수	설치비율(%)	사서교사수	배치비율(%)	비 고
국 민 학 교	6,122	3,989	65.2	12	3.0	
중 학 교	2,539	1,380	54.4	57	4.1	
고 등 학 교	1,735	1,471	84.8	205	13.9	
합 계	10,396	6,840	65.8	274	4.0	

* 학급문고는 제외하였음.
* 도서실과 교실겸용을 모두 도서관으로 간주하였음.
* 사서교사의 배치 비율은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수에 대한 비율임.

〈표 4〉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타난 사서교사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생 략
대학도서관	생 략
학교도서관	1. 국민학교에는 36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 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 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각 1인을 둔다.

원시설로서 육성, 활용하고 금년(1990년)내로 관계법령 개정 및 직제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2년이상 경과되도록 지시사항의 불이행은 물론 학교도서관 정책의 부재 등은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에 하루 빨리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모든 교사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서교사 만이 배제되어 있어 교육법의 자격기준과 연계시킬 수 없고, 교육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의 배치기준과 개선방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 〈표 5〉와 같다.

〈표 5〉 교육법 시행령상의 사서교사 배치기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교 원	교육법시행령 제4장(교원)
제1절 총 칙	제1절 총 칙
제2절 국민학교	제2절 국민학교
제38조 (양호교사) 18학급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무의촌에 있어서는 18학급미만의 경우에도 양호교사 1인을 들 수 있다.	제38조의2 (사서교사) 18학급 미만은 겸임사서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1인의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한다.
제3절 중학교	제3절 중학교
제40조 (교원)	제40조(교원)④-4
③특수한 기술을 담당하는 교사(이하 "특수교사"라 칭한다)와 양호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외에 이를 둘 수 있다.(개정 86.1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정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임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연구주임교사, 체육중학교의 경우에는 체육주임교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75.9.8, 86.12.1, 88.9.1, 89.11.23, 91.2.1)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 1인	교도주임교사, 사서주임교사 각 1인과

현 행	개 정 안
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 및 학생주임교사 각 1인	⑥18학급 이하의 중학교에는 겸임사서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이상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각 1인을 두어야 한다. 단, 30학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의 사서교사와 1인의 실기교사를 둔다.
4. 18급이상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연구주임교사·학생주임교사·국민윤리주임교사·새마을주임교사·과학주임교사·체육주임교사 및 교도주임교사 각 1인과 학년마다 학년주임교사 1인	
제4절 고등학교	제4절 고등학교
제43조 (교원)	제43조(교원)④-4
③특수교사와 양호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 외에 이를 들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정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임교사를 들 수 있다. 다만, 8학급이하의 학교에 있어서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연구주임교사,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체육주임교사 각 1인을 들 수 있다. (개정 75.9.8, 86.12.1, 88.9.1, 89.11.23, 93.2.24)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 및 학생주임교사 각 1인	교도주임교사, 사서주임교사 각 1인과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학생주임교사 및 윤리주임교사 각 1인	⑥18학급 이하의 고등학교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각 1인을 두고, 18학급 이상에는 사서교사 1인 실기교사(사서)2인을 두어야 한다. 단, 30학급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를 각 2인씩 둔다.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연구주임교사·학생주임교사·윤리주임교사·새마을주임교사·과학주임교사·체육주임교사 및 교도주임교사 각 1인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교무주임교사·연구주임교사·학생주임교사·윤리주임교사·새마을주임교사·과학주임교사·체육주임교사 및 교도주임교사 각 1인과 학년마다 학년주임교사 1인	

III. 學校司書

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다음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學校敎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 整理, 分析, 보존, 蓄積 및 그 이용
② 讀書指導 및 圖書館이용의 指導
③ 視聽覺資料의 開發, 製作 및 이용
④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단 한사람의 사서교사에게 맡겨서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도서나 시청각기교재의 선택, 구입, 정리, 관리, 이용지도, 교육과정연구, 학습프로그램 개발, 독서교육 등 그 업무의 전문성과 방대한 업무량은 사서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아침부터 밤 늦게 까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사서의 배치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로 학교도서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표 6〉과 같이 직능별로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표 6〉 미국 학교도서관 매체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학 생 수	전문사서직		보 조 직		합 계	
	사서주임	전문사서	전문기사	보 조 원	최 저	최 고
250	1	0	1	1	2	3
500	1	0-1	1-2	2-3	4	7
1,000	1	2-3	3-5	3-5	9	14
1,500	1	3-5	4-6	4-6	12	18
2,000	1	4-7	5-8	5-8	15	24

IV. 시설 및 설비

현행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5조에는 학교도서관을 보통교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 7〉과 같이 학교도서관의 열람좌석수와 비치도서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실, 운동장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의 경우 보통교실과 겸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좌석수만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규모에 따른 도서관의 크기를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도서관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무시하고 있다.

〈표 7〉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분	열 람 좌 석 수	도 서 수
국 민 학 교	보통교실 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 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고 등 학 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표 8〉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안

설명	학교별 / 학급규모 (국)	면적 학급규모 (중·고)	국민학교 규격	국민학교 면적	중 학 교 규격	중 학 교 면적	고등학교 규격	고등학교 면적	적 요
열람실	12미만	12미만	m^3	90	m^3	120	m^3	140	좌석수는 전체학생의 10%, 면적은 국민학교는 1.3,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18이상	12이상	m^3	140	m^3	170	m^3	190	
	24이상	24이상	m^3	200	m^3	220	m^3	250	
	36이상	36이상	m^3	290	m^3	310	m^3	340	
참고열람실	12미만	12미만	m^3		m^3	40	m^3	70	중학교는 열람실의 1/3, 고등학교는 1/2로함.
	18이상	12이상	m^3		m^3	50	m^3	90	
	24이상	24이상	m^3		m^3	70	m^3	120	
	36이상	36이상	m^3		m^3	100	m^3	170	

설명	학교별 / 학급규모 (국)	면적 학급규모 (중•고)	국민학교 규격	국민학교 면적	중학교 규격	중학교 면적	고등학교 규격	고등학교 면적	적요
시청각실	12미만	12미만	m^3	90	m^3	120	m^3	120	국민학교는 1학급수용(60명)1인당 1.5, 중고등학교는 2학급 수용 1인당 1.5
	18이상	12이상	m^3	90	m^3	180	m^3	180	
	24이상	24이상	m^3	90	m^3	180	m^3	180	
	36이상	36이상	m^3	180	m^3	180	m^3	180	
영사실	12이상	12이상	m^3		m^3		m^3		
	24이상	24이상	m^3	120	m^3	140	m^3	180	
정간실	12미만	12미만	m^3		m^3		m^3		12학교미만은 학교열람실에 병치하고, 12학급이상은 규모에 불구하고 교실 1칸 정도로 한다.
	18이상	12이상	m^3		m^3	75	m^3	75	
	24이상	24이상	m^3		m^3	75	m^3	75	
	36이상	36이상	m^3		m^3	75	m^3	75	
정리실	12미만	12미만	m^3	21	m^3	25	m^3	25	
	18이상	12이상	m^3	21	m^3	25	m^3	25	
	24이상	24이상	m^3	21	m^3	30	m^3	30	
	36이상	36이상	m^3	21	m^3	30	m^3	30	
컴퓨터실	24미만	24미만	m^3	80	m^3	90	m^3	90	
	24이상	24이상							
직원열람실	24이상	24이상	m^3	120	m^3	180	m^3	180	

국민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을 보통교실과 겸용한다는 규정은 학교도서관이 필요없다는 것과 같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열람좌석수 20석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겠다는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도서관의 크기도 다르게 규정하여야 하고,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에 열람실, 정리실, 시청각실 등의 공간 면적과 필요한 비품 및 용구 등의 내부시설을 규정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V. 資 料

학교도서관의 자료기준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행본 만을 규정하고, 학교교육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는 시청각자료와 정기간행물은 제외하고 있다. 규정되어 있는 단행본 만을 살펴 보면, 학생 1인당 2.5권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학교도서관 전체도서수가 500권, 600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최저기준을 규정하였겠지만 이러한 장서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심한 형편이다. 자유중국과 일본은 학생 1인당 5권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1인당 10권, 미국은 학생 1인당 최저 16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보잘것 없는 기준이다. 198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는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 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컴퓨터 교육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1년 도서관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오히려 기준이 후퇴하였다. 바람직한 방안을 표로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학교도서관의 자료기준

구분	학교규모	도서		시청각자료		연속간행물 잡지
		기본도서	년차증가	기본자료	년차증가	
국민학교	18학급미만	3,000권	300권	600종	60종	10종
	18학급이상	4,000	400	800	80	15
	24학급이상	5,000	500	1,000	100	20
	36학급이상	7,000	700	1,400	140	25
중·고등학교	12학급미만	5,000권	500권	1,000	100	20
	12학급이상	6,000	600	1,200	120	25
	24학급이상	7,000	700	1,400	140	30
	36학급이상	10,000	1,000	2,000	200	40

* 국민학교는 도서 학생 1인당 3권 기준, 시청각자료는 도서의 5분의 1.
* 중고등학교는 도서 학생 1인당 5권 기준, 시청각자료는 도서의 5분의 1.

VI. 豫 算

학교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직원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학교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 따라 육성회비에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약간의 경비를 도서관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육성회비도 없어져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 학교도서관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중·고등 학교의 경우는 학교도서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거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중·고등학교에서는 인건비 조차 부족하여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1. 예산 확보방안

(1) 국민학교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전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학생 1인당 월 400원 정도를 계상하여 국고에서 지원한다.

예) 학생 1인당 월 400원
분기당 400원×3개월=1,200원
연간 1,200×4분기=4,800원
학교당 4,800원×1,150명(24학급, 학급당 48명 기준)=5,552,000원
* 1992년 평균 책값 전체 평균가격 7,191원
학습참고서 4,663원
아동도서 5,637원

(2)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의 내역에 수업료, 육성회비로 되어 있는 항목에 학생도서비를 독립항목으로 신설하여 학생 1인당 월 600원 정도를 부과한다.

예) 학생 1인당 월 600원
분기당 600원×3개월=1,800원
연간 1,800원×4분기=7,200원
학교당 7,200원×1,150명(24학급, 학급당 48명 기준)=8,280,000원

2. 학교도서관 예산 배정비율

구 분	자료구입비	제본수리비	운 영 비	각 종 회 비
비 율	70%	10%	10%	10%

Ⅶ. 職制 確立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 예산, 조직, 관리, 운영 등을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보면, 학교도서관을 관장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다. 1991년 도서관 전담부서가 문화부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사회국제교육국의 사회교육제도과 업무분장 4항에 "도서관의 지원, 육성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이라는 사항이 있어 사회교육제도과에서 학교도서관을 관장해 왔으나, 도서관 전담부서가 문화부로 이관되고 난 후에는 사회교육제도과 업무분장 5항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육성"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현재 교육부에는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도서관의 전담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교육지원시설이므로 교육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정책실 산하의 대학학무과 업무분장 4항에 "대학도서관의 운영지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도서관은 그 어디에도 관장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 교육행정기관 직제를 살펴 보면, 초등교육국 산하 초등장학과의 업무분장 3항에 "시청각교육, 공작 및 학급문고관리의 지도"라는 항목이 있고, 중등교육국산하 사회체육과의 업무분장 3항에 "소속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부에는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없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초등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학급문고 만을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고, 중등의 경우는 학교도서관을 체육교과를 전담하는 사회체육과에 분장하여 학교도서관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학교도서관을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1. 교육부의 도서관 전담부서

교육부내의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는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보조, 지원시설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제도과를 지양하고, 실제로 초등과 중등학교를 관장하는 보통교육국 산하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 보통교육국 산하 7항에 학교도서관과를 신설하고 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보통교육국)
⑦ 학교도서관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설치 계획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운영재원의 확보
3.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수급 및 배치
4.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 및 감독
5.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분석 평가
6. 학교도서관 기준 제정 시행
7. 독서교육 교육과정 운영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전담부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역시 초

등과 중등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으로 나누어 신설한다. 국민학교도서관은 초등교육국산하에 학교도서관과를 신설하여 관장하도록 하고, 중등학교도서관은 중등교육국 산하에 학교도서관과를 신설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9조 (초등교육국)

⑥ 학교도서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설치 계획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운영재원의 확보
3.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수급 및 배치
4.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 및 감독
5.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분석평가
6. 학교도서관 기준 제정 시행
7. 독서교육 교육과정 운영

제10조 (중등교육국)

⑦ 학교도서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설치 계획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운영재원의 확보
3.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수급 및 배치
4.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 및 감독
5.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분석 평가
6. 학교도서관 기준 제정 시행
7. 독서교육 교육과정 운영

Ⅷ. 結 論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은 다른 어떤 관종의 도서관들 보다도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도서관이다.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서교사도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1급, 2급의 구분과 초등, 중등의 구분이 이루어져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위직으로의 승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
2.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고, 교육법에 사서교사의 배치기준만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법의 자격기준과 연계시키고,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법상에 사서교사의 배치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이외에 실기교사와 학교사서를 조속히 배치하여야 하겠다.
4. 시설 및 설비기준이 학교의 규모를 무시하고, 필요한 각종 시설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5. 학교도서관의 자료기준이 단행본 만을 규정하고 있고, 너무 열악한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6. 학교도서관의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초등의 경우는 의무교육의 정신에 따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도서비를 신설하여 학교도서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끝으로, 교육부는 하루 빨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인격도야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창조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전담사서교사의 배치와 자격 세분화,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자료의 확충, 학교도서관의 예산 지원을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 주기를 촉구한다.

〈학교도서관 관계법령〉

1. 교육법 : 법률 제4523호 (1992. 12. 8)
2. 교육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3858호 (1993. 2. 24)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13282호 (1993. 1. 30)
4. 지방 교육행정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13867호 (1993. 2. 24)

5. 국립학교설치령 : 대통령령 제13859호 (1993. 2. 24)
6. 교육공무원법 : 법률 제4376호(1991. 5. 31)
7. 교육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제13717호 (1992. 8. 25)
8.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대통령령 제13591호 (1992. 2. 17)
9. 교원자격검정령 : 대통령령 제13837호 (1993. 2. 16)
1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육부령 제628호 (1993. 2. 6)
11.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12.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부령 제626호(1993. 1. 26)
13. 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 대통령령 제13735호 (1992. 10. 1)
14. 도서관진흥법 : 법률 제4352호(1991. 3. 8)
15. 도서관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3342호 (1991. 4. 8)
16. 도서관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부령 제7호 (1991. 7. 16)
17.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 교육부고시 1992-7호(1992. 3. 10)
18. 주임교사 임용규정 : 교육부훈령 제477호 (1991. 3. 8)
19. 학교교구 · 설비기준 : 교육부고시 제1992-5호 (1992. 2. 29)
20. 초 · 중 · 고등학교 육성회 자율화 지침 : 교재 25440-605(1987. 12. 30)
21. 제6차교육과정 :
    교육부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 9. 30)
    교육부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1992. 6. 30)
    교육부고시 제1992-1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 3 7-7 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 · 5616

성 명	저 자	발행연도	면 수	정가
한국십진분류법 (본표 · 상관색인)	분류분과위원회편	1980	1,300	20,000원
한국목록규칙 (3.1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101	4,000원(반양장)
한국도서관통계 (1992 년 도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2	138	8,000원
도서관학 · 정보학 용어사전	사공 철 등 편	1986	336	15,000원(반양장)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
도서관백서(1992)	한국도서관협회	1992	250	6,500원

*회원특전 : 우리협회 회원이 상기 출판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정가의 20%가 할인됩니다.